



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(안)

제주특별자치도의회
보건복지안전위원회

I. 감사개요

1. 감사의 목적

- 「지방자치법」제41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9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
 -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·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
 -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

2. 감사 기간

- 2018. 10. 17(수) ~ 10. 26.(금)

II.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

《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건 》

1. 이슈브리프를 현안과 정책동향을 반영한 내용으로 발행하도록 하고, 연말에 몰아서 발간하지 말고, 정기적으로 국내외 이슈 되는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발행하기 바람